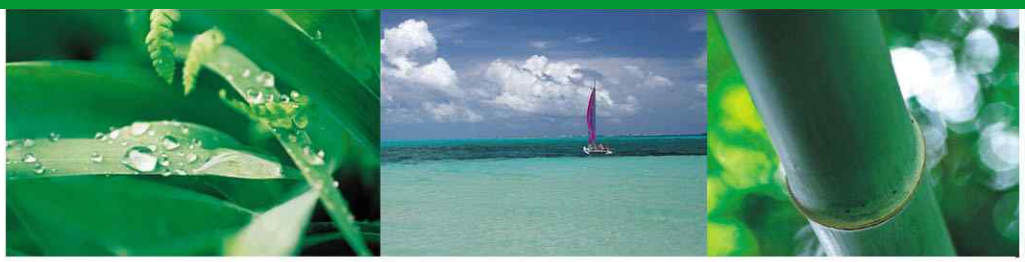
주간건설 Review

640호 2020.8.28(금)



(사)한국건설경영협회
KOREA FEDER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ORS
홈페이지 : http://www.kfcc.or.kr, 연 락 처 : 02-771-7936
주 소 : (121-916) 서울 마포구 공덕동 467 롯데캐슬프레지던트 101-2103

주간건설 Review

CONTENTS

▣ 업계 동향

- ㈜한라, 2020 성장 Story Workshop 개최
- 포스코건설, 스트리트 갤러리 오픈
- 호반건설, 곡성군 수재민에 전기밥솥 300대 전달

▣ 건설경제 일반동향

- 해외건설수주, 코로나19 여파로 본격 하락세 전환

▣ 건설 제도·정책 동향

-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
- '하도급법 개정안' 입법예고
- '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' 입법예고
- '건설신기술 未적용시 보고 의무 법안' 논란

주간 건설 REVIEW

<기간 : 2020.8.22.(토)~2020.8.28(금)> | 제640호 2020.8.28(금)

<업계 동향>

◈ ㈜한라, 2020 성장 Story Workshop 개최



2020 성장 Story Workshop에 참석한 ㈜한라 임직원들

○ 8월21일 ㈜한라는 한라인재개발원에서 한라의 미래모습 및 전략방향 도출을 위한 '2020성장Story Workshop'을 개최하였음

○ 한라그룹 정몽원 회장, 한라홀딩스 홍석화 사장, ㈜한라 이석민 사장을 비롯해 임원, 팀장, 그룹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이날 Workshop은 COVID-19 상황을 고려하여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온라인 실시간 중계방식으로 진행되었음

○ 박형렬 애널리스트 초청 특강을 시작으로 전사 중장기 목표, 각 사업 부문별 전략 발표가 차례로 이어졌으며, 'Keys to the Future'란 주제로 한라의 미래 방향에 대한 발표와 Q&A 시간이 있었음

◈ 포스코건설, 스트리트 갤러리 오픈



○ 8월25일 포스코건설은 건설현장 펜스에 구족화가들의 예술작품을 전시한 'with POSCO 스트리트 갤러리'를 열었다고 밝혔음

○ 구족화가는 질병이나 사고로 신체장애를 갖게 돼 입과 발가락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를 말하는 것으로, 포스코건설은 지난 8월13일 경기 광주 '오포 더샵 센트럴포레' 현장 펜스를 시작으로 연내에 인천 송도, 경기 광교·평택, 대구 등 자사의 지역별 대표 현장에 구족화가 작품을 전시할 계획임

○ 포스코건설은 지난 7월 송도 사옥과 서울 강남구 신사동 더샵갤러리에서 김영수, 박정, 오순이, 이호식, 임경식, 임인석, 임형재, 황정언 작가 등 8명의 구족화가 특별전을 여는 등 후원을 계속하고 있음

○ 포스코건설은 구족화가의 예술작품 활동 범위를 넓히고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중개해 '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'이라는 그룹 경영이념을 실천하겠다"고 설명하였음

◈ 호반건설, 곡성군 수재민에 전기밥솥 300대 전달

○ 8월21일 호반건설은 유근기 곡성군수, 남도문화재단 윤주봉 이사장, 호반건설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곡성군청에 전기압력밥솥 300대를 전달하였음



남도문화재단 윤주봉 이사장과 유근기 곡성군수(왼쪽부터)

○ 곡성은 최근 하룻밤 새 450㎜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는 물론 농경지, 시설물 등이 유실 또는 침수되는 등 큰 피해를 입은데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수해복구에 난항을 겪고 있었음

○ 한편 호반건설은 앞서 지난 8월12일에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서도 2억원의 성금을 전달하는 등 이번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음

◈ 해외건설수주, 코로나19 여파로 본격 하락세 전환

○ 올해 초 양호한 실적을 보였던 해외건설수주가 코로나19의 직접적 영향권에 들면서 급격한 하락세로 전환

<주요내용>

❒ 현황

- 올해 들어 8월28일까지 해외건설 수주액은 178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0% 가량 증가세를 유지했지만, 이는 지난해부터 추진된 대형 프로젝트가 연초 수주로 이어진데 따른 것에 불과함
- 코로나19 바이러스가 2월 이후 본격화하면서 감염 예방을 위해 각국이 입국 제한조치를 단행했고 '셧다운'(일시적 업무정지) 조치 등이 이어지면서 발주, 계약이 연기되는 경우가 일상화되면서 앞으로도 해외공사 수주는 쉽지 않을 전망
- 실제 3월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수주절벽이 본격화하면서 월별 해외수주액이 급격히 하락세로 전환해 지난 7월 수주액은 6억5407만 달러로 전년 동기 14억480만 달러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치며 2005년(4900만 달러) 이후 가장 낮은 수주액을 기록

<2020년 월별 해외건설수주액 추이>

(단위 : 억달러)



자료 : 해외건설협회(8월 실적은 8/28 누계 기준)

❒ **향후 전망과 대응**

-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앞으로의 해외건설 수주 전망도 어두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설업계는 코로나19발 수주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현 공사 현장의 공기 지연 손실이라도 발주처와의 협의를 통해 최소화한다는 계획
- 우리 건설사들의 텃밭인 중동지역 국가들도 코로나19 확산세를 진정시키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어 신규 발주 여력이 없는 상황인데다 국제유가도 장기적으로는 하향세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어서 중동 지역 발주 축소는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
- 해외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현상도 원가 등 비용 부담으로 작용해 해외수주에 악재
- 건설업계는 공기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공기 지연 비용을 실적에 선반영하는 동시에 발주처와 논의를 통해 추후 비용을 일정부분 보전받는 방안을 강구하는 여러 대책을 마련 중

◈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

○ 8월25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'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'을 의결함

<개정안 주요내용>

❒ 전속고발제 폐지

- 공정거래법상 사회적 비난이 큰 경성담합(가격 담합, 공급 제한, 시장 분할, 입찰 담합)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

❒ 사인의 금지 청구제 도입

- 불공정 거래 행위(부당 지원 행위 제외)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·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 청구제를 도입

❒ 자료 제출 명령제 도입

- 담합·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 시 손해액 입증을 지원하기 위한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제 도입

❒ 과징금 상향

- 법 위반 억지력 확보를 위해 과징금 상한을 2배로 상향조정*

  * 담합 10%→20%, 시장 지배력 남용 3%→6%, 불공정 거래 행위 2%→4%

❒ 정보 교환 행위 유형 보완

- '정보 교환 행위'를 담합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법률상 추정 조항과 금지되는 행위 유형 보완

◈ '하도급법 개정안' 입법예고

○ 8월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 권익 향상과 손해배상소송 활성화를 위해 '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'을 마련·입법예고함

○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,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, 법제처 심사,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

<개정안 주요내용>

❒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 및 신청사유 확대

- '중소기업중앙회'를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에 포함
- 원가절감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약정 체결 후 납품 물량 변동 등 예상치 않은 사정으로 공급원가 등이 하락하지 않은 경우도 조정 신청사유에 포함

❒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도입

-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하여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
- 특히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을 거부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*에는 법원은 문서 등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(예: 원사업자의 발주취소 등)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
  *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,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경우
- 한편,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의 비밀유지명령 조항 및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, 준비서면 또는 증거 등에 영업비밀이 포함되는 경우 법원의 명령으로 자료를 소송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, 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는 것 등을 금지할 수 있게 함
- 이러한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최대 징역 2년 또는 최대 2천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규정도 마련

❒ 중소기업의 과징금 분할납부 범위 확대

-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과징금이 10억 원 이하라 하더라도 과징금의 일시 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, 하도급법에 과징금 분할납부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구체적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하여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분할납부 요건이 되는 과징금 금액을 '10억 원 초과'에서 '5억 원 초과'로 규정

◈ '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' 입법예고

○ 국토교통부는 8월21일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'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'을 입법예고하고, 오는 12월10일부터 시행 예정

<개정안 주요내용>

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

❒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제도의 수립

-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은 2층이상 10층미만 건축물의 건설공사 중 1,000㎡ 이상의 공동주택, 근린생활시설, 공장, 창고의 건설공사로 규정하고,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검토하여 15일 이내에 승인토록 함

-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은 건설공사 개요, 비계 설치계획, 안전시설물 설치계획으로 시공 중 안전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세부내용을 수립하도록 규정

❒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의 점검자 자격강화

-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의 점검자 자격기준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의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의 검사원 이상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도록 함

❒ 일부항목에 대한 품질시험 및 검사 면제

- 건설재료에 대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, 일부 항목에 대하여는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
-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업무부담을 완화를 위해, 면제항목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는 현장 반입 시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도 포함토록 함

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

❒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마련 등

-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관한 세부내용 마련
- 발주자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 필요한 작성비용을 안전관리비로 공사금액에 계상하여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안전관리비로 집행 가능토록 함

❒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점검항목 신설

- 건설기계의 정기안전점검 점검항목을 설치·해체·인상 등 안전작업절차 및 전도·붕괴에 대비한 안전조치 적절성으로 규정

❒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 개정

- 공사장내 기계·장비와 충돌·협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내 전담 유도원 배치와 16층 이상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장 전체의 안전관리 실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CCTV 설치를 의무화
- 화재사고를 대비하여 대피계획을 수립하고, 화재위험이 높은 단열재 시공시기부터 대피훈련 실시를 의무화
- 공사장 주변의 보행자 안전을 위해 공사장 외부로 선회방지를 위한 타워크레인 설치·운영계획을 마련하고, 무인 타워크레인은 장비별 전담 조종자 지정 의무화

◈ '건설신기술 未적용시 보고 의무 법안' 논란

○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('20.7.13 발의)이 논란이 되고 있음

○ 개정안은 공공공사에 건설신기술을 우선 적용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(의무화) 하고 있는데, 신기술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한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과 지나친 규제로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 등 다수의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

○ 개정안에 대해 건설업계 일부에서는 공무원들이 장관 보고를 감수하면서까지 신기술 적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고, 제도 시행시 신기술 미보유 기업들은 지금보다 실적 쌓기가 어려워져 장기적으로는 신기술 시장 자체에도 부정적일 수 있다고 우려함

○ 반면, 건설신기술업계는 이미 서울시에서 조례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부작용이 없다고 하면서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입장

<개정안 주요내용>

❒ 건설신기술의 우선 적용

- 발주청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우선 신기술을 적용하도록 하고, 신기술의 내용상 건설공사에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신기술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둠

❒ 건설신기술 미적용시 보고 의무

- 신기술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때에는 해당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 알리도록 함